

Monthly Tax Newsletter

Issue 133 | July 2025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TKC

Contents

법인세법

3

- [심판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종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던 쟁점금액을 추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경우, 쟁점금액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를 ‘환급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예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 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 산정방법

조세특례제한법

6

- [심판례] 창업 후 3년 이내에 연구개발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가 창업 후 3년이 지나 벤처투자유형으로 다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8

- [예규] 파트너십이 국조법상 CFC 대상인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

소득세법

9

- [예규]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10

- [판례] 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비 등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예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

- [판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승)
- [심판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 추정사유(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예규]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임원 취임 요건 적용방법

법인세법

[심판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종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던 쟁점금액을 추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경우, 쟁점금액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를 ‘환급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4서4862, 2025. 5. 14.

[사안]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시행사로, 2015년에 마곡택지개발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을 분양하였고,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대상인 매입세액을 착오로 불공제대상으로 신고하는 한편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 2018년 5월경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여 2018. 8. 20.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쟁점금액”) 및 환급가산금을 환급받는 한편, 쟁점금액을 해당 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하여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고, 위 환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8사업연도에 쟁점금액 및 환급가산금 전액을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였음. 청구법인은 2024. 3. 20. 쟁점금액 및 환급가산금의 합계액을 익금불산입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급가산금만을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함.

[판단]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그 금액을 지급하는 시점에서는 현금의 유출이 발생하긴 하나, 그 금액이 자산으로 대체되었다가, 당초 계상했던 자산이 상계되어 소멸하므로, 결과적으로 매입세액의 발생이 법인의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지는 아니하는바, 법인세법 제21조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부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 등)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세기본법은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는 경정청구를 통해, 제45조에서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통해 각각 세법에 맞게 납세의무자가 당초에 신고된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음. 쟁점금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데, 청구법인이 당초에 쟁점금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 알아 그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당초 신고내용을 바로 잡았고, 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통해 쟁점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당초에 적게 신고·납부하였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법한 금액으로 바로 잡음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모두 각 세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순자산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어야 할 것을, 착오로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한 것처럼 잘못 세무신고를 하였다가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환급받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조세채권이 다른 자산(현금)으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여 달리 순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청구법인의 순자산 증가와 관련이 없는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코멘트]

- 국세청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착오로 인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음(사전 2019-법령해석법인-0463, 2019. 10. 29.).

[예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 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 산정방법

국세조세제도과-357, 2025. 6. 2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 2 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코멘트]

- 법인세법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제2항 제1호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함)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함. ☞ 대상예규에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은 자본시장법상 기준가격의 공고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경우로 보임.

조세특례제한법

[심판례] 창업 후 3년 이내에 연구개발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가 창업 후 3년이 지나 벤처투자유형으로 다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조심 2024서3244, 2025. 5. 27.

[사안] 청구법인은 2016. 5. 2. 설립되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한 유·초등 전문 가정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2017. 7. 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나목의 ‘연구개발유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유효기간: 2017. 7. 27.~2019. 7. 26.)받았고, 2018년 중 벤처기업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투자기관(“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36.83% 지분율 확보)를 받았으며, 위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2019. 7. 27. 벤처기업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의 ‘벤처투자유형’으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유효기간: 2019. 7. 27.~2021. 7. 26.)받았음. 청구법인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2020사업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전액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였고, 2021 및 2022사업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쟁점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확인받은 벤처기업확인서는 ‘연구개발유형’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세액감면이 적용되나, 청구법인은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는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2021 및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함.

[판단] 조특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벤처기업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제1호) 또는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제2호)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감면대상 과세기간인 2020~2022사업연도 중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 제2조의 2 가목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있고, 창업 후 3년 이내인 2017. 7. 27.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연구개발유형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후 2017·2018사업연도 중 수입금액의 5%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2018년경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의 요건 또한 갖추게 됨에 따라 2018년 1월경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형을 벤처투자유형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벤처기업확인기관에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유형을 변경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당초 발급받은 확인서상 유효기간 만료일(2019. 7. 26.)의 다음날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연구개발비 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코멘트]

- “벤처기업”이란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벤처기업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각 목(3가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벤처투자 유형(가목), ② 연구개발유형(나목), ③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다목)}을 말함(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확인제도 참조).
-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① 적격투자기관의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및 ②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비율이 1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벤처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3(벤처기업의 요건 등) 제1항}, 연구개발유형의 경우 ①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및 ②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이상 (②는 창업 후 3년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제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벤처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5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예규] 파트너십이 국조법상 CFC 대상인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사전-2024-법규국조-0503, 2025. 5. 15.

파트너십이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외국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 제시된 파트너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코멘트]

- 국조법 제2조(정의) 제2항은 “제1항과 이 법의 다른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조특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용어의 예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인세법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 법인세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대상예규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의법인(내국법인)이 미국법인(“A Corp”)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그 결과 총 19개국 30여개의 법인 및 단체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 편입하게 됨. 질의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 중 미국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이 미국 현지에서 투과과세되는 단체에 해당하여 구성원인 “A Corp”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유한파트너십이 국조법 제27조 제1항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 한편, 2022. 12. 31. 국조법 개정 시 국외투과단체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하여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국조법 제34조의 2)하였음. 국조법 제34조의 2 제2항은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등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3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을 한 경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대상예규에서 “A Corp”은 국외투과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조법 제34조의 2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소득세법

[예규]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5-법규재산-0064, 2025. 6. 26.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된 것, “구 소득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0, 2024. 8. 29.)은 국세청 기존 해석(재산-560, 2004. 3. 5.)을 변경한 새로운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2024년 7월 당시 구 소득령 제157조 제5항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코멘트]

- 과거 국세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으나(재산-560, 2004. 3. 5.), 기재부는 구 소득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0, 2024. 8. 29.).
- 대상예규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년 7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같은 해 8월 생산된 위 기재부 해석이 국세청의 기존해석을 변경한 새로운 해석에 해당하는지 및 2024년 7월 기준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기재부 해석과 같이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제외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함.
-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3629 판결).
- 한편, 2025. 2. 28.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법인주주는 주주1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가 개정되었음.

부가가치세법

[판례] 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비 등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2두33637 판결

[사안] 원고는 구 「지방공기업법」(1991. 5. 31. 법률 제4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및 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1989. 12. 18. 서울특별시조례 제2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2002. 1. 1. 원고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및 노원구 등에서 다수의 사용자에게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하였음. 이에 원고는 서울 양천구에 집단에너지사업단(“사업단”)을 설치하여 2002. 1. 1.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이 사건 용역”)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사업비(재료비, 인건비, 경비, 지역난방 건설비, “이 사건 사업비”)와 위탁수수료(인건비와 경비의 3%)를 수취하였음. 원고는 사업단과 관련하여 2002. 1. 4. 피고에게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2002. 4. 18. 과세사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음. 이후 피고가 2003. 6. 9. 원고에게 2002년 제1, 2기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자 원고는 면세사업자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음. 원고의 본점은 위탁수수료 부분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원고의 사업단은 위 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음. 피고는 이 사건 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는 한편,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사건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06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지하였음.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사업자등록 의무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으며(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8492 판결 등)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의무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항은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기존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가 여전히 과세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해당 정정신고서가 제출될 때 구 부가가치

[판단] 세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과세사업자로서 등록신청으로 보게 되는 효과
계속 가 발생함을 전제로, 단지 기존 등록사항 중 일부를 정정하는 내용의 신고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사유인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역시 사업자가 영위하는 과세사업의 종류(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는 ‘업태’와 ‘종목’을 의미한다)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지,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까지 위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나아가 어느 과세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용역의 성격을 과세사업이 아니라 면세사업으로 오인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사업자등록 말소사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음에도 과세관청이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지 아니한 채 과세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기존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적법하게 등록된 지위가 박탈된다거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이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 본문(“이 사건 조항”)의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고,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는 등록사실의 증명 또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인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바(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잘못된 사무처리로 인해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음. 결국 원고가 2002. 4. 18. 피고 양천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도 계속 영위하였다면, 그 후인 2003. 6. 12. 위 피고에게 면세사업자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원고의 기존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비록 원고가 2003. 6. 12.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이후에 발생한 것일지라도 이 사건 조항의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코멘트]

- 1심은 원고의 2003. 6. 12.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사업자등록 말소사유나 면세사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정신고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사무처리를 잘못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원고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표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20. 8. 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 항소심은 원고가 2003. 6. 12.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함으로 인해 원고의 기존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2020누55383 판결), 대법판결은 이를 파기환송한 것임.

[예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서면-2024-법규부가-3234, 2025. 6. 30.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등록사업자인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가 되는 것임. 이 경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코멘트]

- 대상예규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질의법인(내국법인)은 국외 특수관계자이자 무형자산 소유권자인 미국본사로부터 A게임을 국내에서 비독점적으로 게임 및 플랫폼을 운영 및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았음(국내사용자들과 최종사용자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A게임을 설치할 수 없어 사용이 불가함).

② 질의법인의 모바일게임 공급 거래구조는 국내사용자들이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앱 오픈마켓에서 앱 결제 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고, 국내사용자들이 지급한 모바일게임 앱 구입대금은 앱 오픈마켓 운영자가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미국본사에 지급하면 미국본사는 수취한 대금에서 질의법인과 비독점적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수익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질의법인에 지급하는 구조임.

③ 질의법인은 국내사용자들과의 최종사용자 라이선스계약상 질의법인을 모바일게임 공급주체로 판단하여 모바일게임매출에 관하여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외국법인인 앱 오픈마켓 운영자들은 앱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의 경우 라이선스계약 체결 당사자가 미국본사이므로 국내 최종사용자들이 다운받은 게임의 글로벌 공급주체를 미국본사로 판단하고 질의법인의 매출 신고·납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간편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가세 신고·납부함.

- 대법원은 모바일게임 사업을 하는 국내법인이 모바일게임 서비스 공급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료중 국외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이용료를 라이선스를 가진 해외법인이 직접 수령하여 정산받는 구조에서 모바일게임의 공급주체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세를 무신고한 사안에서, 국내법인이 이용자와 모바일게임의 이용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위 계약에서 정한 약관에 따라 원고는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지는 점 등을 근거로 국내법인이 용역의 공급자이자 이용료 소득의 귀속자로 부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 대상예규는 위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입장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승)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두30271 판결

[사안] 원고는 2020. 4. 3.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0분의 4 지분(“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고, 같은 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2019.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 한편 이 사건 지분 증여일 전 2019. 6. 8. 이 사건 아파트와 주거전용면적이 같은 아파트(“이 사건 유사재산”)에 관하여 거래가액 1,92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됨. 피고는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오자,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768,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1,920,000,000원 × 4/10)으로 보아 2022. 11. 1.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고지함.

[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해당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서, 그 본문은 평가기간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그 단서는 평가기간 외의 기간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해당 재산이 아닌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법문에서는 위 제49조 제1항과의 관계를 놓고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되어 있을 뿐,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라는 식으로 그 적용 국면이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자체에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존재하는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이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그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만 규정하였다가,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 즉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는 부분과 유사한 내용이 새로이 추가되었는데, 당시의 개정 이유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 존재한 유사재산 거래가액 등만을 시가로 인정

[판단] 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
계속 까지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었음. 만일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
 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된다는 견해를 취하게 되면, 납세자가
 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사이
 에 현격한 불균형이 초래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위 견해에 따르면, 납세자가 구 상증
 세법 제68조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때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
 항의 괄호 부분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존재하는 유사
 재산 거래가액 등만이 시가에 해당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반면,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이 적용될 수 없게 되어 결과적
 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그 본문 및 단서를 불문하고 유사재산 거래가액 등에 대
 하여 그대로 적용되어 시가 인정 범위가 확장되는 결론에 이르게 됨. 이처럼 부과세방식의 세목
 인 증여세의 납세자가 적법하게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
 일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
 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
 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코멘트]

- 1심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
 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곧바로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82827 판결),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
 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49881 판결), 대법판결도 원심을 수긍한 것임.

[심판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 추정사유(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3서10708, 2025. 5. 21.

[사안] 청구인은 부친(“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비상장주식인 A사(“쟁점법인”) 발행주식(지분을 100%로, “쟁점주식”)을 비롯한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후, 가업에 해당하는 쟁점법인의 주식이액에서 한도액을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등 2021. 9. 23. 상속분 상속세를 2022. 3. 31. 신고·납부하였음. 이후 쟁점법인은 2022. 6. 8. 쟁점주식 중 일부를 균등유상감자(“쟁점유상감자”)하였고, 청구인은 2022. 12. 30.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을 이유로 상속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유상감자는 지분율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로서 사후관리 추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음.

[판단] 구 상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추정이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가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면서 바목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가 신설되었는데, 개정이유 등을 보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인 지분의 감소로서 출자금의 회수도 없는 경우, 즉 주로 자본잠식 등 회계상 손실해소를 위한 것으로 출자금이 회수되지 않고 지분비율도 유지되는 균등무상감자의 경우 지분 감소에 따른 추정의 예외(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는바, 상속세 추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는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미열거된 균등유상감자는 상속세 추정사유에 해당하는 점, 지분비율은 유지되나 출자금을 회수한 쟁점유상감자의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이고,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균등유상감자는 인위적으로 사업의 규모 및 자본금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므로 이를 통해 가업의 규모 및 자본금을 축소하게 되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인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므로 사후관리 위반으로 봄이 타당한 점,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17부5161, 2018. 3. 26.)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가 2019. 2. 12.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코멘트]

- 기재부는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는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 12. 23.).

[예규]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임원 취임 요건 적용방법

기준-2024-법규재산-0188, 2025. 6. 18.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제2호 라목의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는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코멘트]

- 대상예규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의자는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 외 가업상속공제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 적용방법(쟁점)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 위 쟁점에 관한 질의자 제시 견해대립: 임원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은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갑설), 임원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견해(을설), 임원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원에 준하는 지위는 대표자이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자로 근무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견해(병설) ⇨ 대상예규는 을설 및 병설을 모두 인정한 것임.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ey Contacts

이재호

부대표(센터장)

T. 02.2112.0520

E. jlee315@kr.kpmg.com

이윤영

상무

T. 02.2112.7037

E. yoonyounglee@kr.kpmg.com

오혜주

S.Manager

T. 02.2112.0954

E. hoh7@kr.kpmg.com

주미현

S.Manager

T. 02.2112.4602

E. mihyunjoo@kr.kpmg.com

우진욱

S.Manager

T. 02.2112.7802

E. jwoo6@kr.kpmg.com

박재현

Manager

T. 02-2112-6596

E. jpark99@kr.kpmg.com

주정연

Manager

T. 02-2112-7038

E. jungyeonjoo@kr.kpmg.com

김솔

Staff

T. 02.2112.7906

E. solkim@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